

## 1. 고용촉진지원금

### ◆사업의 목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최고900만원** 인건비 지원.

### ◆사업내용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가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구직등록 후 1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3개월 단위로 1명당 연간 **최대 900만원** 지원.
- 임금의 75% 한도 내에서 지원.
- 사업주가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월 통상임금	120만원미만	120~130만원미만	130~140만원미만	140~150만원미만	150만원이상
연간 지원액	600만원	720만원	780만원	840만원	900만원
월평균 지원액	50만원	60만원	65만원	70만원	75만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2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30)에 대해서만 지원금지급.

- 새로 고용한 지원 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 **연도 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 수 기준**

### ◆취업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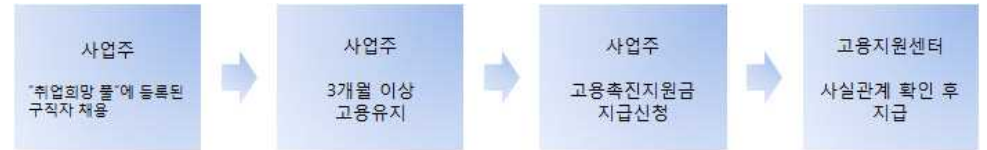
(참고: <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401Info.do>)

운영기관	인정자격 및 인정기간	기타사항
<b>[취업성공패키지]</b> (고용노동부)	* 1단계 마치고 2,3단계 참여중인 자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 3단계 이수자	2,3단계 진행 중 스스로 중단 시 자격 안 됨.
<b>[50+새일터적응지원사업]</b> (고용노동부)	* 1단계 마치고 2,3단계 참여중인 자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 3단계 이수자	2,3단계 진행 중 스스로 중단 시 자격 안 됨.
<b>[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b>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 이수자로 만 40세 이상인자	40세 미만이라도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이면 이수 자격 인정
<b>[고령자 취업능력 향상프로그램]</b> (고용노동부)	* 이수자	
<b>[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학습지원 사업]</b> (여성가족부)	* 2단계 마치고 3단계 참여중인 자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 3단계 이수자	3단계 참여자가 참여 중 스스로 중단 시 자격 안됨.
<b>[출소자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b>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1단계 마치고 2,3단계 참여중인 자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 3단계 이수자	2,3단계 참여자가 참여 중 스스로 중단 시 자격 안됨.
<b>[시험고용 프로그램]</b>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이수자	

<b>[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b>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 이수자	참여 중 스스로 중단 시 자격 안됨
<b>[직업재활 프로그램]</b>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이수자	
<b>[자활근로]</b> (지방자치단체)	* 자활사업 2개월 이상 참여 중 인자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활사업 참여가 중단될 경우 인정 안됨
<b>[희망리본 프로젝트]</b> (보건복지부)	*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 이수자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프로그램 참여가 중단될 경우 인정 안됨
<b>[전진기본교육]</b> (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제대군인지원센터)	*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직기본훈련]을 이수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취업워크숍]에 참여한 사람	워크숍 참여한 날로부터 인정

### ◆신청방법

월 통상임금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경되며, 3개월 단위로 제출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구직자 채용(사업주) → 3개월 이상 고용유지(사업주)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 ◆감원방지기간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

단, 지원대상 근로자 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

### ◆관련문의

[비즈페이 담당자 (062-720-4842)]

##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 ◆사업의 목적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비정규직 재고용)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등 여성근로자와 1년 이상 계속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육아휴직 등 부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

### ◆사업내용

구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비정규직 재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임신기간 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에 끝나는 경우.</li> <li>*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li> <li>※ [2014년 개정]2014년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중에 계약이 만료되어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li> <li>6개월간 월 40만원 지원.</li> <li>*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li> <li>6개월간 월 3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 지원.</li> </ul>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육아휴직등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 등 기간동안</li> <li>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li> <li>*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시 장려금 50%지원 + 6개월 계속 고용시 나머지 50% 지원</li> </ul>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li> <li>*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li> <li>*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li> <li>※ [2014년 개정]2014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만 써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li> <li>*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li> </ul>

### ◆신청방법



### ◆감원방지기간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 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단, 지원 대상근로자 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

### ◆관련문의

[비즈페이 담당자 (062-720-4842)]

## 3.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변경된 이름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 ◆사업목적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용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연장 또는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 ◆사업내용

구분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정년연장 지원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주	① 정년을 폐지한 사업장. ②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b>단.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지원금 산정 시 제외</b>	정년이 폐지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로부터 1년경과 다음날부터 최대 1년간 월 30만원 지원 <b>&lt;정년연장 1인당 월 30만원 지원&gt;</b> * 1~3년 미만 : 1년 * 3년 이상 연장 : 2년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정년 퇴직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재고용하는 사업주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시 지원. <b>단. 고용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제외.</b>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1~3년 미만 재고용 : 6개월 * 3년 이상 재고용 : 1년

### ◆감원방지기간

정년퇴직자재고용은 재고용전 3월, 재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지원.

### ◆신청방법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관련문의

[비즈페이 담당자 (062-720-4842)]

#### 4.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사업

##### ◆사업목적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연장 또는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 ◆사업내용

구분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내용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한 사업주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이상 고용 시 지원.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초과 근로자 1인당 분기별 18만원 지원.

##### ※ 업종별 지원기준율

(참고: <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405Info.do>)

구분	지원기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li> <li>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li> <li>금융 및 보험업(64~66)</li> </ul>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업(41~42)</li> <li>숙박 및 음식업(55~56)</li> <li>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li> <li>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li> <li>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 임업 및 어업(01~03)</li> <li>운수업(49~52)</li> <li>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업(05~08)</li> <li>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li> </ul>	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2개 업종은 15년 1분기 신청 부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li> <li>경비 및 경호서비스업(75310)</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li> <li>경비 및 경호서비스업(75310)</li> <li>건축물일반청소업(74211)</li> <li>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li> <li>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li> </ul>	23%
기타 업종	7%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23%	
그 밖의 업종	2%	

##### ◆감원방지기간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기간 동안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 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

##### ◆신청방법



##### ◆관련문의

[비즈페이 담당자 (062-720-4842)]